

## 교육실습 I(교육봉사활동), 교육실습II(학교현장실습) 안내문

\*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해 교육실습 I, II(각 2학점)를 반드시 수료 전 정규등록학기 이내에 모두 이수하여야 합니다. 본 교육대학원에서 운영하는 교육실습교과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해당 원생은 시기 및 절차에 따라 교과목을 이수하여 교원자격증 취득에 문제가 없도록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교육실습 학점체계: 교육실습I(교육봉사활동/2학점) + 교육실습II(학교현장실습/2학점)

\* 유의사항

- 교육실습 I, II는 학기당 수강신청 가능학점에 포함되지 않으며, 교육실습 I은 석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 (27학점)에도 포함되지 않음
- 해당 교과목은 매 학년도 1학기에만 개설됨

### 2. 교육실습 이수과정 총괄표

1학기~ 학교현장실습 직전학기	학교현장실습 직전학기	학교현장실습 해당 학기 (3학기생부터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봉사활동기관 개별 섭외 및 교육봉사활동 실시 (총 60시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현장실습학교 개별섭외 완료(10월 초까지)</li> <li>• 교육실습지도승낙서(실습학교 직인 날인) 행정실 제출 (9월 말~10월 중)</li> <li>• 학기말까지 봉사활동기관에서 발급받은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평가서 제출(12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봉사활동확인서 제출자에 한함</li> <li>• 교육봉사활동, 학교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신청(교육실습 I,II)</li> <li>• 포용적교육역량특강(총6강좌) 이수</li> <li>• 교육실습비 납부</li> <li>• 학교현장실습 실시(4월, 5월 중 택1)</li> <li>• 현장실습 후, "교육실습일지" 교직부 제출</li> <li>• 교육봉사활동의 성적은 이수 여부 확인 후 S/U로 표기</li> </ul>

### 3. 교육실습 I, II 이수 대상자

: 교직과정 이수신청자 중 중등학교 정교사(2급), 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학교 정교사(2급), 전문상담교사(2급) 취득 예정자는 교육실습 I(교육봉사활동), 교육실습II(학교현장실습) 모두 이수하여야 함.

교육실습 I(교육봉사활동)		교육실습II(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60시간)	포용적교육역량특강	이수
이수	이수	

※ 교육실습 면제 기준

2024년 이후 입학생이 이미 2급 이상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현직 교사 여부 및 자격종별 무관하게 교육실습 I, II 모두 면제

\* 면제 대상자는 반드시 "교육실습면제신청서"를 해당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면제 처리됨.

단, 특수교육 전공은 교육실습II의 대상자별 면제 심사를 전공에서 별도 진행하여 승인된 경우에만 면제 가능함.

구분	2023학년도 입학생까지	2024학년도 입학생부터
2급 이상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대한 교육실습 영역 면제	1)현직교사인 경우:교육실습 I,II면제  2)현직교사 아닌 경우:소지한 교원자격증과 교육대학원에서 취득하려는 교원자격증의 종별이 동일한 경우만 교육실습II면제  ※현직교사:정규교원(기간제교사,종일제시간강사,강사,인턴교사 제외)	2급 이상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현직교사 여부 및 자격종별 무관하게  <u>교육실습 I,II모두 면제</u>

4. 교육실습 I(교육봉사활동/2학점) 이수 안내

가. 학점이수체계: 2학점

1) 교육실습 I(교육봉사활동) = 교육봉사활동 60시간 + 포용적교육역량특강 총 6강좌 수강

나. 이수 과정

	1학기~학교현장실습 직전학기	학교현장실습 직전학기	학교현장실습 해당 학기 (3학기생부터 가능)
이수 관련 사항	1. 봉사활동기관 개별 섭외 및 교육봉사활동 실시 (총60시간)	1. 학기말 지정기간(12월 중순) 관련 서류 제출	1. 교육실습 I(교육봉사활동), 교육실습II(학교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신청 (교육봉사 서류 제출자에 한함)
제출 서류	【서식1】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기관별 교육봉사활동 시작 전 교육대학원 행정실 제출	【서식2】 [교육봉사활동확인서]: 기관별 작성, 지도교사 확인 및 학교장 직인 날인  【서식3】 [교육봉사활동평가서]: 60시간 교육봉사 완료 후 봉사내역 누가 기록	2. 포용적교육역량특강 온라인 강의 수강, 과제 제출

다. 수강신청 및 성적

- 수강신청: 학교현장실습 해당학기에 교육실습 I(교육봉사활동), 교육실습II(학교현장실습) 2과목 동시에 신청
- 성적평가: 교육실습 I(교육봉사활동)의 성적은 '교육봉사활동 60시간 + 포용적교육역량특강'의 이수 여부 확인 후 S/U로 평가

**라. 이수방법**

**1) 포용적교육역량특강: 매학년도 1학기에 개설**

- 가) 이수과정: 포용적교육역량특강(구, 교육상담 특강) 총 6강좌 수강 및 과제 제출
- 나) 이수시기: 학교현장실습 해당 학기 수강
- 다) 강의형태: 온라인 수업
- 라) 신청방법: ED113 교육실습 I(교육봉사활동) 수강신청  
교육실습 I(교육봉사활동)을 수강 신청한 학생에 한해 사이버캠퍼스 온라인 강의 수강 가능
- 마) 수강방법: 신청학기 내에 사이버캠퍼스에 개설된 온라인 강의 모두 수강
- 바) 평가방법: 온라인 강좌 중 6강좌 100% 이수 및 과제 제출 시에만 이수 인정

**2) 교육봉사활동**

- 가) 이수과정: 교육봉사활동(총 60시간) 실시
- 나) 이수방법: 입학 후 봉사활동 기관을 개별 섭외하여 교육봉사활동(총 60시간) 실시
- 다) 교육봉사활동 실시 가능 학교
  - 학교현장실습 실시 가능학교 전체 및 전공분야와 관련된 교육기관
  - 교육봉사활동 실시 가능학교 : **전국 시도 교육청의 유, 초, 중, 고등학교**
    -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해 설립된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 각종학교, 고등기술학교, 산업체 부설 중·고등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각종학교'로 인가된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 타 법령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준하는 학교로 규정되어 설립된 학교
- 라) 유의사항
  - 교육봉사 나가기 전 반드시 교육봉사활동계획서(또는 교육봉사활동 자율선택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함
  - 교육봉사활동 개별섭외 시 섭외기관에서 **공문을 요청할 경우 불임 파일의 공문을 출력하여 사용하면 됨**
  - 봉사활동기관은 2개 이상도 가능하나 2개 이상일 경우 교육봉사활동 계획서와 확인서는 기관별로 제출해야 함
  - 교육봉사는 하루 최대 8시간까지 인정 가능
  - **본인의 전공과목이 아니더라도 교육봉사 조건과 일치하면 과목에 상관없이 교육봉사로 인정됨**
  - 2021학년도 2학기 재적생부터 **휴학기간에 활동한 교육봉사도 인정됨**
  - 교과목 학습지도, 진로 및 진학·학습·학교 생활에 대한 멘토링, 방과후 교실 지도, 초등학교 돌봄교실 지도 등 순수교육 목적의 **대면으로** 이루어진 무보수 교육 활동만 인정 가능.  
단, 봉사기관이 실비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내교통비와 점심 식대(1일 4시간 이상일 경우) 등으로 예외적으로 10,000원/일 내외의 금액을 받을 수도 있음
  - **단순업무 보조, 도서 정리, 중·고등학생 대상 급식지도 또는 등·학교지도, 자습감독, 시험감독 등 학생과의 교육적 상호작용이 없고 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활동은 인정 불가**  
(특히 확인서 내용 작성 시, 이와 같은 활동이 기재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
  -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과 교육봉사활동의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아도 가능
  - 교육봉사활동 실시는 "다)"에 기재된 "학교"급에서만 실시해야 함

봉사활동기관	사전제출서류	제출방법
전국 유,초,중,고등학교	교육봉사활동계획서 *본인서명 필수 *메일로 승인회신(2~3일 소요)	대표메일 <a href="mailto:gedewha@ewha.ac.kr">gedewha@ewha.ac.kr</a>
비영리기관 <b>(본교 교원양성위원회 승인 기관만 인정)</b>	교육봉사활동 자율선택신청서 *반드시 기관장 날인을 받고 서류제출 *메일로 승인회신(2~3일 소요)	등기우편제출 또는 행정실 제출 <b>*원본이어야 함</b>

### 5. 교육실습Ⅱ(학교현장실습) 이수 안내

가. 이수시기: 매년 봄학기 4월 또는 5월 중 택1(중등학교, 전문상담교사2급), 특수학교, 유치원)

나. 이수과정

학교현장실습 전학기	학교현장실습 해당 학기(3학기생부터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교육실습학교를 개별 섭외하여 교육실습지도승낙서에 해당 학교장 직인 받은 후 행정실로 제출 (9월 말~10월 중)</li><li>• 자세한 내용은 여름방학 중 공지사항 확인</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교육실습 I (교육봉사활동), 교육실습Ⅱ(학교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신청(교육봉사활동확인서 및 교육실습지도승낙서 제출자에 한함)</li><li>• 교육실습비 납부<ul style="list-style-type: none"><li>- 2026학년도 기준 150,000원(일부 학교 제외)</li></ul></li></ul>